

『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』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0년 3월 24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3월 24일

라. 상정일자 : 2010년 4월 1일

제15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강 재 용

나. 제안이유

- 1979년에 준공된 비둘기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결과 C등급으로 전반적인 보수·보강등 리모델링이 필요하여 교리 도시개발 사업지구내 신축 부지 매입(7,000㎡)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 되었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상태임
-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보다 공사비가 저렴한 지상 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직원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【취득재산】

□ 비둘기아파트 신축 부지

- 토 지 : 9,855m²
- 기준가격 : 3,260,000천원(분양가 기준)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7조
- 「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」 제5조, 제12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배 정 미

○ 본 계획안은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에 의거 비둘기아파트 신축 부지를 추가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서
- 구미시 선산읍 교리 도시개발사업지구 체비지 9,855m² (분양가 기준 3,260,000천원)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임

○ 검토결과

- 비둘기아파트 신축부지 매입(7,000m²)에 대해서는 2009년도 공유 재산관리계획안이 승인 되었으나,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부지를 추가 매입코자 당초 부지면적 7,000m²에서 9,855m²(당초대비 2,855m²증가)로 변경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 규정에 저촉사항 없음

- 다만, 지하주차장보다 공사비가 저렴한 지상주차장 확보를 위한 부지 추가매입 사유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 론 요 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